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교육 포함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803)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회적응을 위해 정착지원시설에서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교육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려는 내용임(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생략)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제11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제16조 및 제17조), 주거지원(제20조), 정착지원금 지급(제21조), 거주지 보호(제22조), 교육지원(제24조)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적응교육은 현행법 제15조²⁾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정착지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본교육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2)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812명³⁾으로 이 중 마약류 사범이 32.5%(2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는 마약을 상비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접근이 쉬워 그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탈북 경로(북한-중국-동남아-한국)가 마약 유통·거래 경로와 비슷하며, 국내 정착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류 범죄 발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 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은 건강한 사회 적응과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제15조제2항제1호(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제3호(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와 관련한 기존 교육 체계 내에서 이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법률에 별도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교육을 명시할 것인지는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관련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실태조

3) 5년간(2018년~2022년)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수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년 180명, ▲2022년 166명

사를 통해 교육 필요성을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현황〉

구분	프로그램	교과주제	시수	교육내용
여성	정규 프로그램 (400시간)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34	- 마음나눔, 마음돌봄, 건강관리법 - <u>마약중독예방(2시간)</u> , 결핵예방, 체육활동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162	- 직업선호도 검사, 진로지도 - 직종설명, 기초직업훈련, 취업설계
		우리사회 이해증진	153	- 시장경제적응, 사회이해 교육 - 정보화교육 - 언어교육, 현장체험
		초기 정착지원	30	- 정착지원제도, 신변보호담당관 안내 - 설문 및 교육평가
		성평등·법정교육	21	-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u>법률피해구제사례교육(3시간)</u> 등
	자율 참여형 프로그램 (372시간) 일과 전후 주말	정서안정	76	- 영화감상, 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 - 탁구교실
		문화예술체험	110	- 노래교실, 댄스교실, 난타교실, - 뷰티교실, 문화예술교실
		언어교육	84	- 우리말교실, 발음·억양교정, - 표준화법상담, 영어회화, 중국어 교실
		정보화(수준별 분반)	56	- 정보화교육·자격취득(ITQ한글) 지원
		진로탐색	46	- 부모교육, 운전이론, 자격취득반
남성	정규 프로그램 (400시간)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33	- 심리이해, 심리검사, 체육활동 - 긍정적 자아형성, <u>마약중독예방(2시간)</u>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152	- 직업선호도 검사, 진로지도 - 직종설명, 기초직업훈련, 취업설계
		우리사회 이해증진	152	- 시장경제적응, 우사회이해 교육 - 정보화교육 - 언어교육, 현장체험
		초기 정착지원	23	- 정착지원제도, 신변보호담당관 안내 - 설문 및 교육평가
		성평등·법정교육	40	- 양성평등 교육,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u>법률피해구제사례교육(3시간)</u> 등
	자율 참여형 프로그램 (345시간)	정서안정	83	- 레크레이션, 문화이해
		문화예술체험	110	- 박물관, 역사탐방, 노래교실, - 문화예술교실
		언어교육	36	- 우리말교실, 발음·억양교정, - 표준화법상담, 기초문해교육
		진로탐색	116	- 정보화교육, 기초학력증진, - 맞춤형멘토링, 직업체험

자료: 통일부

□ 통일부는 탈북민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은 현행 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 교육’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마약 관련 교육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탈북민이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267
